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138
----------	--------

제출년월일: 2022. 11.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소속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변경,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장 및 제복 개정(안 제12조제3항)

-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준용 법령 등 변경

나. 특별휴가 일부조항 삭제 및 개정(안 제24조)

-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3항과 중복되어 삭제(제9항)
-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제13항)

다. 기타 관계 법령 폐지 및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용어 등 정비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2. 11. 3. ~ 11. 7.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평가 제외 대상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평가 제외 대상
- 5)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2022. 11.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창의와 성실로써**”를 “**창의적이고 성실하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획득하기에**”를 “**획득하기 위해**”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무원의 신분증**”을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증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개폐**”를 “**개편·폐지**”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⑬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창의와 성실</u>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p>	<p>제3조(책임완수) ----- ----- ----- <u>창의적이고</u> <u>성실하게</u> -----.</p>
<p>제5조(친절·공정) ① (생략)</p> <p>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u>획득</u>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친절·공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획득</u> <u>하기 위해</u> -----.</p>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생략)</p> <p>② <u>소속기관의 장</u>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구청장</u>----- ----- ----- ----- -----.</p>
<p>제12조(복장 및 제복) (생략)</p> <p>③ <u>공무원의 신분증</u>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u>공무원증 규정</u>」을 준용한다.</p>	<p>제12조(복장 및 제복) (현행과 같음)</p> <p>③ <u>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u>의 ----- 「<u>국가공무원 복무</u> <u>규칙</u>」-----.</p>
<p>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생략)</p>	<p>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p>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

제24조(특별휴가) ① ~ ④ (생략)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⑥ ~ ⑧ 삭제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삭제

⑪ (생략)

⑫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와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구청장-----

-----.

제24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삭 제>

⑪ (현행과 같음)

⑫ -----

----- 개편·폐지 -----
-----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
-----.

⑬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⑭ · ⑮ (생략)

⑬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⑭ · ⑮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이경미 (☎3153-8215)